



(재) 세종지역사업평가단

SEJONG INSTITUTE FOR REGIONAL PROGRAM EVALUATION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년 10월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임진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취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 R&D 관리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운영 중('19.10 기준)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 범부처 공통규범 성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여 법적 효력에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법이 제정되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구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5개 장, 41개 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5개 장, 67개 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 관련 사항 규정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포함한 9개 행정규칙

## 기관별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li> <li>•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li> </ul>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함</li> <li>•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함</li> <li>•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li> </ul>

## 적용범위 및 경과조치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협약체결의 단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임(따라서, 연차평가 및 연차정산 삭제) (1)

▶ '21.1.10이후부터 신규 또는 계속과제 모두 적용(법 부칙 제1조)

✓ (사례1)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12.31)	'21년 (1.1~12.31)	'22년
사용기준				혁신법 적용 (단계정산)	
정산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회수기준					

✓ (사례2)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6.30)	'21('20.7.1~21.6.30)		'22년
				'20.7.1 ~'20.12.31	'21.1.1 ~6.30	
사용기준				종전규정	혁신법 적용	
정산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혁신법 적용(단계정산)		
회수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과기정통부, '21.2.26, p51)

##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조문 구성

9개 장, 117개 조, 부칙 5개 조, 별표 8개, 별지 17개 서식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1절 사용용도(제5조~제17조)

제2절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18조~제33조)

제3절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33조~제44조)

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45조~제51조)

제5절 기타비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52조~제59조)

제6절 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60조~제69조)

제7절 사용절차 등(제70조~제72조)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제73조~제74조)

제4장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제75조~제78조)

제5장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의 방법과 절차(제79조~제85조)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제100조~제111조)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제112조~제115조)

제8장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제112조~제115조)

제9장 보칙(제116조~제117조)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2)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sup>5)</sup>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sup>6)</sup>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sup>1)</sup>	특례 <sup>2)</sup>	일반 <sup>3)</sup>	특례 <sup>4)</sup>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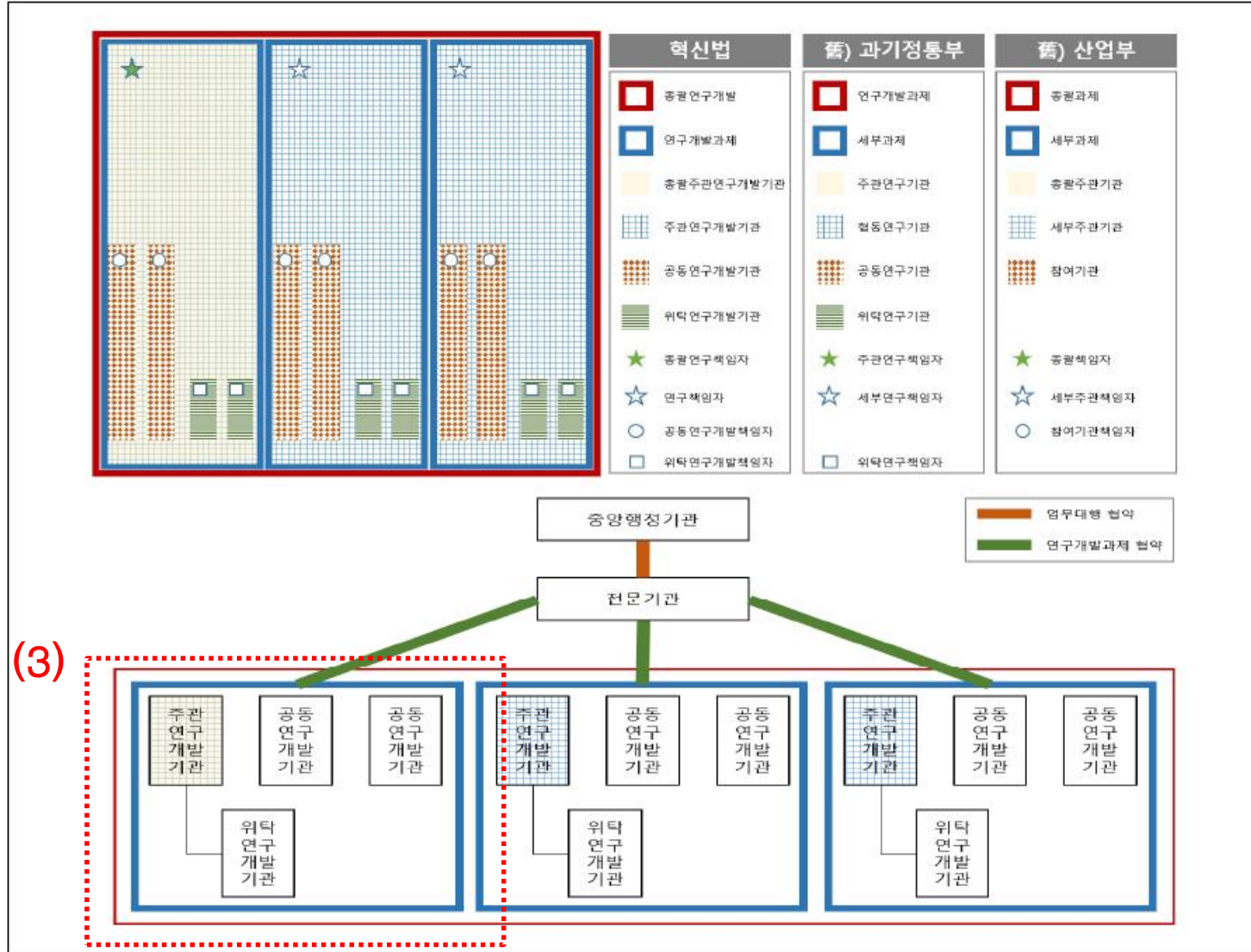
## 질문사항

1.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연차평가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2. 부처별 훈령·고시에 포함될수 있는 내용
3. 계속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4. 20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5. 연구개발단계가 3년인데 1·2차년도에 이미 정산을 실시한 경우, 3차년도 단계정산시 1·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 다시 정산해야 하는가?

DOONE 도원회계법인  
Accounting Corporation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협약체결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과제의) 연차협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연구개발기간</li> </ul>
협약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연구개발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li> </ul>
협약 체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li> </ul>
협약변경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변경의 승인/통보사항 기준 및 요구절차 부처별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법에 따른 통일된 기준 적용</li> <li>• 경미한 사항은 통보로 같음</li> </ul>
협약해약 사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에 의해 전문적인 평가(특별평가)를 거쳐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이 가능</li> </ul>



[그림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구조와 협약방식

### (실무 상)사전 승인사항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정부지원금액 또는 기관부담금액 변경(현금과 현물의 변경 포함)
	3.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4.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변경
	5.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1)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2)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3)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ZEUS를 통해 무상이전 받으려는 경우 제외) 4)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 과제의 경우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 이상 증액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8. 해당 단계의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

## (실무 상)통보사항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협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공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됨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경미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li> <li>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li> <li>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li> <li>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li> <li>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li> </ul>
사전 협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li> <li>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li> </ul>

### 질문사항

1. 기존의 연구개발과제가 총괄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2.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가?
3.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
4.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가?
5. 기존에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에도 혁신법이 적용되는가?
6. 단년도 협약을 체결한 다년도 과제의 경우, 협약을 개정해야 하는가?
7.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 실시 가능여부

### 3 연구개발비의 구성 · 지급 · 이관

#### 연구개발비의 구성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영 제19조제4항 외 과제	영 제19조제4항 해당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	○

####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자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3 연구개발비의 구성 · 지급 · 이관

#### 연구개발비의 지급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통합Ezbaro	일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 일괄지급</li> <li>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 건별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li> <li>공기업이 아닌 경우 : 건별지급</li> </ul>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건별지급 가능	
통합RCMS			건별지급	

#### 연구개발비 이관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직접비	직접비 잔액	직접비 잔액
간접비	<p>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                      간접비총액*-(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p> <p>* 간접비 총액은 연구개발비 이관시점까지 수령한 간접비금액을 말함</p>	간접비 잔액

# 4 연구개발비의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 공통계상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종합하여 제출 가능</li> <li>•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총액만 작성하고 항목별 내역은 작성 불필요(연구시설·장비는 내역 작성)</li> </ul>
연구개발비 지급방식 및 지급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Ezbaro(한국연구재단): 비영리기관-일괄지급, 영리기관-건별지급</li> <li>• 통합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모든기관-건별지급</li> </ul>
연구개발비 공통계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비: 해당 과제수행에 필요한 금액 계상</li> <li>• 간접비: 여러 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금액 계상</li> <li>• 그 밖의 경우 :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 가능(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 금지)</li> </ul>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비용, 기관 내부거래, 계열사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 기관간 거래비용</li> </ul>

## 연구개발비 공통인정기준

계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li> </ul>
입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li> </ul>
검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li> </ul>
사용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함</li> <li>•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li> <li>2) 연구수당</li> <li>3)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SW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li> </ol> </li> </ul>
사용형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다만, 외국물품 수입 등 연구비카드·계좌이체 사용불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현금사용 가능)</li> </ul>

# 4 연구개발비의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비용

### 연구개발기관내 및 기관간 비용

가능항목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가능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불가**

- 1)대학이 같은 대학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 비용
- 2)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중 특정한 경우
- 3)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과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1)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2)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상기 이외의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한 비용
- 3)비영리기관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는 비용

# 4 연구개발비의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비 항목	제한기준	직접비 내 현물 포함여부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간접비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수당 불인정	직접비 사용비율 20%초과	×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검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구매 및 검수의무 미존재(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6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포함) 구매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사용기준 제22조제3항)</li> </ul>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차)</li> <li>•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연차 종료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li> <li>•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단계 또는 최종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사용기준 제22조제4항)</li> </ul>

## 질문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가?
2.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가?

## 인건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li> <li>•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li> </ul>	
사용기준	현금 인건비	비영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계상 가능(교수, 공무원은 현금계상 불가)</li> </ul>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내)</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대기업, 기타)</li> </ul>
	현금인건비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연구개발비의 50% 한도 (5)</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초과 가능</li> </ul>
	인건비계상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율은 월단위 100%(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연은 연단위 130%) 이내 관리</li> <li>• 관리단위: 월단위(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연은 연단위)</li> <li>• 시스템입력주기: 기관의 회계연도일까지 입력</li> </ul>
	기관단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기관(대학, 정부출연기관, 기타기관)은 기관 별도 계정을 거쳐 지급 가능(과제별 인건비계상률 관리 필요)</li> <li>• 영리기관은 인건비 기관단위 관리 불가</li> </ul>
	연구근접지원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 지급 불가</li> <li>•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li> </ul>
주요 변경 사항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율 → 인건비계상률</li> </ul>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 연구근접지원인력</li> </ul>	
	계상률관리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급여총액(정부출연기관은 연급여총액)</li> </ul>	
	계상률입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전까지 1회 입력</li> </ul>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li> <li>*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lt;사용기준 제39조제1항&gt;</li> </ul>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존과 동일)</li> </ul>
인건비계상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li> <li>*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li> </ul>
계상률 관리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없음(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 포함) : 1년간의 급여 총액 단위</li> <li>그 외 기관 : 월급여 총액 단위</li> </ul>
계상률 입력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li> </ul>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li> <li>(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li> <li>*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존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li> <li>(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이내(출연연 기본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li> </ul>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참여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정부 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 불가(3책5공 준수)</li> <li>• (입력) 통합이지바로에 0% 입력불가(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정부 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 (3책5공 준수)</li> <li>• (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 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입력됨</li> </ul>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li> <li>•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li> <li>•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li> <li>• 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li> <li>-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li> </ul> </li> </ul>	<p>&lt;공통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li> </ul> <p>&lt;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li> <li>•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li> <li>•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현금지급최대비율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 계상원칙</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가능</li> </ul>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기준 별지2호 서식) 관리 필요</li> </ul> <p>&lt;사용기준 제65조제6항&gt;</p>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 1. 1.>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 20 . . . .	(년 월)

#### 2.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단위: 천원, %)

구분	현물로 계상하는 인건비(A)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B)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지급 인건비(C)			비율 (C <sub>3</sub> /B <sub>3</sub> ) ×100 <b>(6)</b>
	원래계획 금액 (a <sub>1</sub> )	계획 변경 후 금액 (a <sub>2</sub> )	사용금액 (a <sub>3</sub> )	원래계획 (b <sub>1</sub> )	계획 변경 후 금액 (b <sub>2</sub> )	사용금액 (b <sub>3</sub> )	원래계획 (c <sub>1</sub> )	계획 변경 후 금액 (c <sub>2</sub> )	사용금액 (c <sub>3</sub> )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 \* '원래계획 금액'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계획 변경 후 금액'에 변경이 반영된 결과값을 입력
-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질문사항

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2.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3.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가?
4.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가?
5.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는가?
6. 영리기관이 현금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7.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가?

Q12. 연구개발기관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 B의 2021년 6월달 급여총액이 10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20만원일 경우에, C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4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과 2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에 총인건비계상률은?

총전(참여율)

$$\frac{60}{120} = 50\%$$

현행(총인건비계상률)

$$\frac{40}{100} = 40\%$$

\*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0만원은 총인건비계상률과 별도로 인건비에서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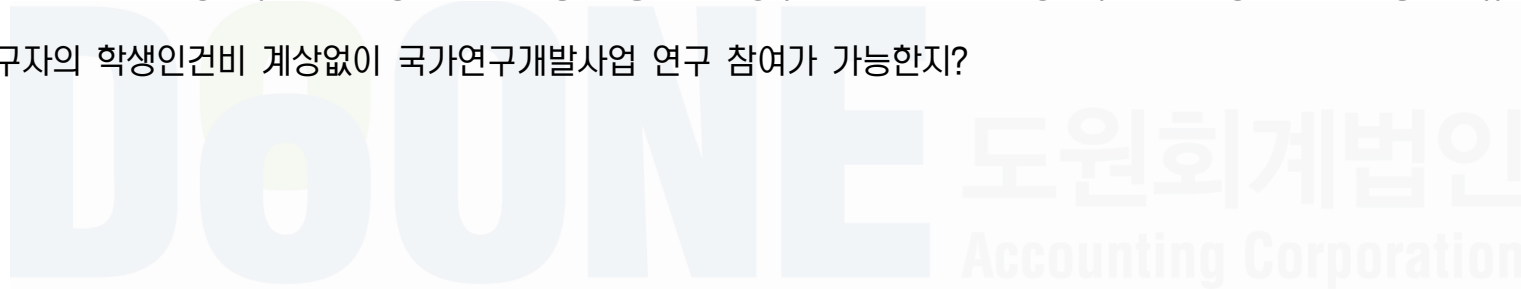
	참여율	인건비 계상율
월급여	100	100
4대보험 등	20	20
과제인건비	40	40
과제 4대보험등	20	20
참여율 인건비계상율	60/120 = 50%	40/100 = 40%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li> <li>•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만 해당)</li> </ul>
사용기준	계상율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율을 월 100%이내 관리
	확약서	•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
	계상기준	•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이상, 석사과정 180만원이상, 박사과정 250만원이상
	지원규정	•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공개(학업 및 연구보장, 처우개선, 학생 인건비계상기준 등 포함)
주요 변경 사항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 → 학생연구자 보유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 <span style="float: right;">(7)</span></li> </ul>
	인건비계상율 제외	• 총인건비계상율에서 재정지원사업등의 인건비 및 장학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및 기타단기근로소득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인 불필요(총인건비계상률 산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박사후연구원인건비	• 학생인건비 지급불가(인건비 지급대상)

## 질문사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자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2.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시한은?
3.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4. 대학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한지? 정부출연기관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시 유의할 점은?
5.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 7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조성비</li> </ul>
사용기준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의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li> </ul>
	사전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연구시설·장비비의 변경</li> </ul>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b>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전까지</b></li> <li>• 재난·재해등 중대한 사유 발생: 최종(단계) 종료일 1개월전까지(중앙행정기관 인정사항)</li> <li>• 연구시설·장비 구축과제: 최종(단계) 종료일까지(중앙행정기관 인정사항)</li> </ul>
	영리기관 현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시작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 자산 구입가의 20%내에서 현물 계상</li> <li>• 구입 완료일 : 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li> <li>• 내용연수 만료일 : 현물계상연도의 말일 이후</li> </ul>
주요 변경 사항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전까지</li> </ul>

##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관리시스템 등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li> </ul>
사용기준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의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 및 시험설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li> </ul>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종(단계) 종료일까지</b></li> </ul>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8)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sup>1)</sup>			
			YY-WW						
			YY-WW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동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활동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밖의비용</li> </ul>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도입비, 전문가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동비</li> <li>• 한도=직접비의 40%(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 가능, 21.1.10이전 사용분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는 식대 계상 불가(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은 가능)</li> <li>• 증빙요건: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영수증</li> <li>• 단, 10만원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목적,일시,장소,내용,참석자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신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여비규정이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li> <li>•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li> <li>•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계획서와 사후에 출장결과보고서 구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사용계약은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전까지 체결(긴급상황시 1개월,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종료일)</li> <li>•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SW사용계약기간의 경우 최소단위 입증하면 계약금액 전부 계상가능</li> <li>•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SW활동비를 기관단위로 통합구매 관리 가능(비영리기관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 아닌 자의 지원비, 종신학회비, 과제무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학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 평일점심 식대,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등 계상 불가</li> <li>• 과제 관련 학회의 연회비(1년)-일할·월할계산 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출연기관: 동일 부서(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 소속된 자 계상 불가</li> <li>•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동일 연구실 소속된 자 계상 불가</li> <li>• 영리기관: 동일 기관 소속된 자 계상 불가</li> </ul>

(9)

## 연구활동비\_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유의사항

비영리기관	전문가활용비	• 최소단위부서(대학:동일 연구실, 정부출연연:동일 부서)내 전문가활용비 계상 불가
	SW활용비	• 여러 과제에서 SW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 통합구매·관리 가능 • 기관 단위 통합구매를 위해 과제별로 필요한 비용 분담 가능
영리기관	전문가활용비	• 동일 기관내 전문가활용비 계상 불가
	현물 기술도입비	•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현물 계상 가능 • 해당 기술 도입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실운영비	•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 소모성비용 계상 불가,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없이 사용가능
	연구과제운영경비 정산 면제	• 직접비(현금·현물)의 5%이하 정산 면제 규정 삭제 (10)
	연구근접지원인력 지원대상	• 연구활동비 지급가능(단,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별지3호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1. 1. 1.>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 20 . . . .	(년 월)

####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금액)

**(11)**

(단위: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 불가
-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별지3호서식

###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

(11)

(단위: 개, 천원)

구분	분류	수량(G)	단가(H)	금액 (I=G×H)
1단계				
	품목명			
	품목명			
n단계				
	품목명			

-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이후 수정 불가
- \*\* '품목명'에는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 '분류'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사무용'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환경유지'를 입력
-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 제3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2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이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 ○ ○  
○○○장 ○ ○ ○

(인)  
(직인)

000의 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m<sup>2</sup>]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사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활용, 협업연구를 위한 비용 포함</li> </ul>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종료(연차) 전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li> <li>(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li> <li>(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li> </ul>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li> </ul>
연구실 운영 위한 소모성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상)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li> <li>(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상) 정부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영리기관 계상불가)</li> <li>(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자체규정 마련필요)</li> </ul>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없음.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계획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 사용 가능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li> </ul>

법인  
corporation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영리기관)	• 별도없음	•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 연구활동비(사용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등)에 한함)가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의 정산 면제	〈삭제〉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 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	•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학회연회비 인정기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연회비 인정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한 학회연회비(1년) 인정

### 질문사항

1.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2.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3.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4. 비영리기관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
5.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DOONE 도원회계법인  
Accounting Corporation

## 연구수당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li> </ul>
사용기준	계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정인건비의 20% 이내 계상</li> <li>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li> <li>원래계획상의 연구수당금액보다 증액계상 금지</li> <li>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연구수당 계상</li> </ul>
	미지급인건비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li> </ul>
	기여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li> </ul>
	1인당 집행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명에게 연구수당의 70% 초과 지급 금지</li> </ul>
	연구수당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li> <li>연구수당집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P이상 초과한 금액 (연구수당지급액×(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 현물제외</li> </ul>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li> </ul>
사용기준	계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의 40%(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 가능)</li> </ul>
	사전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래계획보다 20%이상 증액하여 계상시 사전 승인 필요</li> </ul>
	집행 및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볼(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구비)</li> </ul>
	사용실적보고·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li> </ul>

(12)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당집행 회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li> <li>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li> <li>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li> <li>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li> </ul>	〈삭제〉
정부출연연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 인건비도 연구수당 계상 가능</li> </ul>

구분	종전	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정의가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의 집행금액 또는 위탁기관의 실집행 금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li> </ul>                             〈사용기준 제27조제3항〉                         </li> </ul>
정산 및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아님</li> <li>(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li> <li>(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가능</li> </ul>

## 질문사항

1.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가능한가?
2.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
3.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
4.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총액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가?
5.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7.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간접비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기타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비용,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사용기준	간접비비율 적용	• 연구개발과제 <b>시작(단계)일</b> 의 해당 과제비 고시비율 적용 원칙
	통합관리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간주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 성과평가 실시후 지급
주요 변경 사항	간접비비율적용시점	•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의 경우 해당단계)의 시작시점
	간접비 증액	• 고시비율내에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 고시비율내에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 고시비율	• 5% → <b>10%</b>
	통합관리 명시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 가능, 영리기관 통합관리 불가
	사용제한 명시	•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불가

##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 입력</li> </ul>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일괄지급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b>5일 이내</b></li> <li>• 그 밖의 경우: 사용한 날로부터 <b>5일 이내</b></li> </ul>
	건별지급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b>전일까지</b></li> <li>• 그 밖의 경우: 사용하기 <b>전</b></li> </ul>
일괄지급대상과제의 연구개발비 입력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li> </ul>
	연구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실적 보고일까지(보고서발간 및 평가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등)</li> </ul>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li> </ul>
연구개발비 지급이전의 사용	과제 시작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하루</li> </ul>
	협약 · 지급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 시작일부터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재원 활용 인정</li> </ul>
증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단계)종료후 5년간 보관</li> <li>• 전자문서법에 따른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li> </ul>

##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상시점검 근거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실시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용내역 미입력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구 가능</li> </ul>

## 사전승인사항

### 사전승인 대상

1.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정부지원금액 또는 기관부담금액 변경(현금과 현물의 변경 포함)

3.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4.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변경

5.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1)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2)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3)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ZEUS를 통해 무상이전 받으려는 경우 제외)

4)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 과제의 경우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 이상 증액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8. 해당 단계의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

##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 금액</li> <li>•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금액</li> <li>• 그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금액</li> <li>•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li> </ul>
정산시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현물부담확인서, 연구개발비 사용증명자료</li> </ul>
정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정산</li> </ul>
상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실시전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li> </ul>
연구개발비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야 하고, 회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li> <li>•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li> </ul>
연구개발비 회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대상액 = 직접비 사용 잔액 + 간접비 사용 잔액(협약해약시 간접비 사용잔액, 공기업 이외 기업의 간접비 사용잔액)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액 +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과제의 간접비총액 × (간접비집행비율 - 직접비집행비율)</li> <li>• 회수액 = 회수대상액 × 정부지원금비율 + <b>현물부족부담액</b></li> </ul>

##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13)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

## 질문사항

1. ‘연구개발비 사용일’ 은 언제인지?
2. 정산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 주기는?
4.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산해야 하는지?

